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은군결산검사위원

목 차

I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1
II . 결 산 검 사 경 과	5
III . 결 산 검 사 현 황	9
1. 보은군 재정의 개황	11
2. 세입·세출의 결산	13
3. 기금의 결산	21
4. 재무제표의 결산	22
5. 성과보고서	24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6
7. 금고 결산	28
IV . 분 야 별 개 선 및 권 고 사 항	29
1. 지난연도 수입 징수관리 미흡	31
2. 세입과목 분류기준 준수 미흡	32
3.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관리 미흡	33
4. 세입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부적정	34
5. 순세계잉여금 산정 및 세입 관리 철저	35
6. 세입세출외현금 산정 및 세입 관리 철저	37
7.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39
8. 징수결정 관련부서 일원화	41
9.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43
10. 2025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편성	44
V . 전 년 도 검 사 결 과 조 치 내 용	46

Ⅰ . 결산검사 의견서

2025회계연도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 : 보은군수

2025회계연도 보은군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6년 4월 8일 ~ 4월 27일 [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경 노(보은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윤 석 영(보은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송 석 복(전 산업경제국장)
- 검 사 위 원 : 신 경 수(전 의회사무과장)
- 검 사 위 원 : 배 상 길(전 회남면장)
- 검 사 위 원 : 최 진 원(전 수한면장)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보은군수 귀하

2026년 4월 27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로부터 보은군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4월 8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보은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보은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보은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 은 군 결 산 검 사 위 원

대 표 위 원	이 경 노	서명
검 사 위 원	윤 석 영	서명
검 사 위 원	송 석 복	서명
검 사 위 원	신 경 수	서명
검 사 위 원	배 상 길	서명
검 사 위 원	최 진 원	서명

II . 결산검사 경과

1.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6. 4. 8. ~ 4. 27.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이경노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윤석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검사	
검사위원	송석복	성인지보고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검사	
검사위원	신경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검사	
검사위원	배상길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 검사	
검사위원	최진원	재무제표,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검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결산서	4. 8.	재정상황 파악 건전성 파악	
결산서	4. 9.~ 13.	세입 결산 분야 검사	
결산서	4. 14 ~ 18.	세출 결산 분야 검사	
결산서	4. 19. ~ 21.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사	
첨부서류	4. 22. ~ 23.	채권 및 채무, 기금 결산 검사	
첨부서류	4. 24. ~ 25.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검사	
	4. 26. ~ 27.	결산 검사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III. 결산검사 현황

1. 보은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회계	세입	536,887,952,870	636,878,362,050	593,924,521,790	606,721,839,120	667,697,208,200
	세출	436,794,873,190	523,156,020,020	476,798,819,650	471,366,359,780	542,833,413,080
	결산상잉여금	100,093,079,680	113,722,342,030	117,125,702,140	135,355,479,340	124,863,795,120
특별회계	세입	55,043,539,490	49,741,679,080	44,405,811,210	65,329,224,990	55,091,096,210
	세출	45,498,020,940	40,045,190,260	34,417,148,020	56,045,056,320	39,597,598,280
	결산상잉여금	9,545,518,550	9,696,488,820	9,988,663,190	9,284,168,670	15,493,497,930
기금	수입 (전년도말조성액+당해년도세입)	72,487,827,932	153,542,950,672	169,741,182,438	175,121,912,892	155,113,674,999
	지출 (사용액)	12,284,938,950	8,905,978,710	11,227,262,770	32,212,160,440	38,757,895,920
	결산상잉여금 (년도말조성액)	60,202,888,982	144,636,971,962	158,513,919,668	142,909,752,452	116,355,779,079
총계	세입	664,419,320,292	840,162,991,802	808,071,515,438	847,172,977,002	877,901,979,409
	세출	494,577,833,080	572,107,188,990	522,443,230,440	559,623,576,540	621,188,907,280
	결산상잉여금	169,841,487,212	268,055,802,812	285,628,284,998	287,549,400,462	256,713,072,129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를 검토한 결과, 5년간 평균적으로 세입은 5.1%, 세출은 4.8%, 결산잉여금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5.6%, 5.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은 0.02% 증가, 세출은 3.4% 감소하였다.

세출을 군민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재정 지출규모는 2024회계연도 15,440천원에서 2025회계연도 17,781천원으로 1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5년 말 인구수 : 30,529명

보은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상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치단체 채무계 a(b+c+d)		(해당사항 없음)			
공채 b					
차입금 c					
채무부담행위 d					
지방공기업 채무 e					
채무총합계 f(a+e)					

보은군에서 운용한 2021~2025년 까지 채무는 없다.

(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2025회계연도 보은군의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가.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

$$\text{재정자립도} = 10.3\%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결산규모}} \times 100 \right)$$

※ 지방세(37,341,238,840원): 보통세 + 지난연도 수입

세외수입(20,509,440,260원):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자치단체 결산규모(561,962,793,700원)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전년도 이월사업비

나. 재정자주도(일반회계 기준)

$$\text{재정자주도} = 56.4\% \left(\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자원}}{\text{일반회계 결산규모}}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57,850,679,100원):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자원(259,011,734,000원): 지방교부세 등 + 조정교부금 등

보은군의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10.3%로 전년도 9.7%보다 0.6%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56.4%로 전년도 58.5%보다 2.1%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세입·세출의 결산

(1) 총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
합계	856,253,594,289	877,901,979,409	621,188,907,280	256,713,072,129
일 반 회 계	661,126,263,500	667,697,208,200	542,833,413,080	124,863,795,120
특 별 회 계	52,217,578,340	55,091,096,210	39,597,598,280	15,493,497,930
상수도사업	6,509,400,410	7,735,981,680	5,053,829,650	2,682,152,030
하수도사업	25,205,520,280	25,903,978,690	19,529,876,820	6,374,101,870
수질개선	7,525,159,080	7,582,254,570	7,253,098,470	329,156,100
행복주택	1,712,486,000	1,972,262,800	1,319,653,130	652,609,670
공공실버주택	576,671,000	623,513,550	439,030,630	184,482,92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7,055,767,570	7,041,078,040	3,903,687,480	3,137,390,560
농공단지조성관리	618,130,000	621,130,550	98,811,000	522,319,5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7,415,000	77,504,390	77,300,000	204,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657,164,000	2,191,054,900	713,135,930	1,477,918,970
의료급여기금	564,815,000	563,691,430	537,699,650	25,991,780
주차장	715,050,000	778,645,610	671,475,520	107,170,090
기 금	142,909,752,449	155,113,674,999	38,757,895,920	116,355,779,079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지정재원 잉여금㉦	현년도 채무상환 액㉧	순세계 잉여금 ㉨=㉡-㉢-㉤-㉥-㉦-㉧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53,718,906,070 (272,319,000)	21,702,514,980	24,503,567,910	8,323,729,440	1,805,296,000	0	146,659,057,729
일 반 회 계	49,205,123,270 (272,319,000)	20,732,309,340	21,239,459,320	7,769,771,590	1,805,296,000		24,111,835,600
특 별 회 계	4,513,782,800	970,205,640	3,264,108,590	553,957,850	0	0	6,191,443,050
상수도사업	939,116,800	57,031,000					1,686,004,230
하수도사업	845,215,000	143,487,610	3,264,108,590	482,741,320			1,638,549,350
수질개선	179,051,000	12,265,000		45,722,270			92,117,830
행복주택							652,609,670
공공실버주택							184,482,92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093,400,000	713,101,030					330,889,530
농공단지조성관리	457,000,000	44,321,000					20,998,5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4,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477,918,970
의료급여기금				25,494,260			497,520
주차장							107,170,090
기 금							116,355,779,079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2,788,304,410원으로 예산현액 713,343,841,840원보다 9,444,462,570원이 더 수납 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5%인 582,431,011,360원으로 결산잉여금은140,357,293,050원임.

이중 명시이월비 53,718,906,070원(자금없는 이월 272,319,000원), 사고이월비 21,702,514,980원 및 계속비이월비 24,503,567,910원과 보조금반납금 8,323,729,440원과 지정재원잉여금 1,805,296,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303,278,650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0,303,278,650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전 년 도	593,562,106,680	610,990,648,170	606,721,839,120	45,126,660	4,223,682,390
당해년도	661,126,263,500	672,820,999,310	667,697,208,200	54,053,630	5,069,737,480
증 감	67,564,156,820	61,830,351,140	60,975,369,080	8,926,970	846,055,090

○ 세입결산 개요

예산현액은 661,126,263,500원이며, 징수결정액 672,820,999,310원, 실제수납액 667,697,208,200원, 정리보류액 54,053,630원, 미수납액 5,069,737,480원이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5,734,414,500원을 포함한 661,126,263,5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7,564,156,820원이 증가되었다.

○ 징수결정 및 수납액 현황

672,820,999,310원을 징수결정하여 777,017,782,888원을 수납하고 109,320,574,688원이 환급되어 실제수납액은 667,697,208,200원이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0%로서 6,570,944,700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전년도 보다 60,975,369,08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초과 수납에 기인하고 있다.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99.2%로 나타났으며, 정리보류액 54,053,630원은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 정리보류 처분하였다.

미수납액은 지난해보다 846,055,090원이 증가한 5,069,737,4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유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징수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세입과목 적용 및 세입결산액 검수

세입과목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액과 금고 수납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전년도이월금 (B)	예 비 비 사 용 액	예 산 전 용
전 년 도	520,139,826,000	73,422,280,680	267,581,220	22,000,000
당해년도	555,391,849,000	105,734,414,500	298,289,590	32,830,000
증 감	35,252,023,000	32,312,133,820	30,708,730	10,830,00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C)=(A)+(B)	지 출 액 (D)	이 월 액 (E)	불 용 액 (F)=(C)-(D)-(E)
107,611,515,390	593,562,106,680	471,366,359,780	105,734,414,500 (2,228,684,000)	16,461,332,400
	661,126,263,500	542,833,413,080	91,449,210,930 (272,319,000)	26,843,639,490
△107,611,515,390	67,564,156,820	71,467,053,300	△14,285,203,570	10,382,307,090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로 별도 표시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555,391,84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05,734,414,500원이 이월되어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661,126,263,50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은 2건 32,830,000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추진시 필요한 인건비와 산불예방관련 통신공사 집기류의 취득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추진한 것임.

예비비 사용액은 298,289,590원으로 보은군 노인복지관 변전실 화재 발생에 따른 복구비로 일반예비비 68,095,000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전국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예방홍보 방송장비구입비 86,612,550원. 지속적인 적설로 인한 제설제 비축량 부족으로 제설제 구입비 143,582,040원을 지출하였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1%에 해당하는 542,833,413,08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1,449,210,930원으로 명시이월 49,477,442,270원(자금없는 이월액 272,319,000원), 사고이월 20,732,309,340원, 계속비이월 21,239,459,320원이었으며,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식산업센터건립,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등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약 4.1%에 해당하는 26,843,639,490원으로 전년대비 10,382,307,080원이 증가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반납금 7,769,771,590원, 보조금 정산잔액 4,241,544,260원, 예산절감액 3,695,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919,241,270원, 예산집행 잔액 11,909,397,370원이 발생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24건 49,477,442,270원(자금없는 이월액 272,319,000원), 사고이월 33건 20,732,309,340원, 계속비 이월 16건 21,239,459,3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3.8%로 전년도 17.8%보다 4.0%가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일치되었음.

(3) 특별회계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전 년 도	63,278,017,250	65,599,180,770	65,329,224,990	-	269,955,780
당해년도	52,217,578,340	55,313,953,060	55,091,096,210	-	222,856,850
증 감	△11,060,438,910	△10,285,227,710	△10,238,128,780	-	△47,098,930

○ 세입결산 개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0%로서 전년도 99.59에 비하여 0.01%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이 222,856,850원이 발생하여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0.0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징수율 99.2%보다 0.4% 높은 수준을 보임.

○ 회계별 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계	52,217,578,340	55,313,953,060	55,091,096,210	-	222,856,850
상수도사업	6,509,400,410	7,799,931,840	7,735,981,680		63,950,160
하수도사업	25,205,520,280	25,949,142,370	25,903,978,690		45,163,680
수질 개선	7,525,159,080	7,582,254,570	7,582,254,570		-
행복주택	1,712,486,000	1,972,262,800	1,972,262,800		-
공공실버주택	576,671,000	611,393,440	623,513,550		△ 12,120,11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7,055,767,570	7,045,946,300	7,041,078,040		4,868,260
농공단지조성관리	618,130,000	621,130,550	621,130,55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7,415,000	77,504,390	77,504,390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657,164,000	2,191,054,900	2,191,054,900		-
의료급여기금	564,815,000	563,691,430	563,691,430		-
주차장	715,050,000	899,640,470	778,645,610		120,994,860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전년도이월금 (B)	예 비 비 사 용 액	예 산 전 용
전 년 도	59,097,509,000	4,160,508,250	-	-
당해년도	47,849,191,000	4,368,387,340	-	-
증 감	△11,248,318,000	207879090	-	-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C)=(A)+(B)	지 출 액 (D)	이 월 액 (E)	불 용 액 (F)=(C)-(D)-(E)
-	63,278,017,250	56,045,056,320	4,368,387,340 (54,203,400)	2,864,573,590
-	52,217,578,340	39,597,598,280	8,748,097,030	3,871,883,030
-	△11,060,438,910	△16,447,458,040	4,379,709,690	1,007,309,440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로 별도 표시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47,849,191,000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368,387,3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217,578,34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8%에 해당하는 39,597,598,28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513,782,800원, 사고이월액 970,205,640원, 계속비이월액 3,264,108,590원으로, 이월액 비율이 16.8%로 전년도 6.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증가 원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약 7.4%에 해당하는 3,871,883,030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 553,957,850원, 보조금 정산잔액 660,690,560원, 예산집행잔액 2,657,234,620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일치되었음.

○ 회계별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계	52,217,578,340	39,597,598,280	8,748,097,030	3,871,883,030
상수도사업	6,509,400,410	5,053,829,650	996,147,800	459,422,960
하수도사업	25,205,520,280	19,529,876,820	4,252,811,200	1,422,832,260
수질개선	7,525,159,080	7,253,098,470	191,316,000	80,744,610
행복주택	1,712,486,000	1,319,653,130		392,832,870
공공실버주택	576,671,000	439,030,630		137,640,37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7,055,767,570	3,903,687,480	2,806,501,030	345,579,060
농공단지조성관리	618,130,000	98,811,000	501,321,000	17,998,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7,415,000	77,300,000		115,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657,164,000	713,135,930		944,028,070
의료급여기금	564,815,000	537,699,650		27,115,350
주차장	715,050,000	671,475,520		43,574,480

3. 기금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142,909,752,449	12,203,922,550	38,757,895,920	116,355,779,07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4,725,915,100	442,492,700		15,168,407,8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6,242,441,670	10,147,076,830	34,891,362,000	91,498,156,500
투자진흥기금	895,895,580	27,029,190	22,660,000	900,264,770
재난관리기금	1,136,791,090	742,653,570	566,814,640	1,312,630,020
대청호장학기금	242,011,582	7,409,070	5,400,000	244,020,652
자활기금	1,314,584,230	103,157,840	19,300,000	1,398,442,07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55,848,975	22,050	9,930,000	445,941,025
고향사랑기금	373,991,300	374,311,850		748,303,150
공유재산관리기금	6,084,801,486	135,879,950	2,978,424,780	3,242,256,65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1,174,550	142,359,560	155,320,300	18,213,810
식품진흥기금	207,371,840	6,445,450		213,817,290
옥외광고발전기금	87,138,440	25,978,000	91,284,200	21,832,240
체육진흥기금	1,111,786,606	49,106,490	17,400,000	1,143,493,096

2025 말 현재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42,909,752,449원에서 12,203,922,550원이 조성되고 38,757,895,92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6,355,779,079원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군금고에 정기적금 및 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었으며, 결산내용과 예치금 잔액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확인함.

기금의 지출은 각 기금별로 사용절차 규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4. 재무제표의 결산

(1)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5년	2,258,208,233,456	23,038,196,889	2,235,170,036,567	526,570,820,404	525,398,324,138	- 1,172,496,266	
2024년	2,253,921,826,528	21,996,937,419	2,231,924,889,109	501,463,118,818	468,399,583,099	- 33,063,535,719	
증 감	4,286,406,928	1,041,259,470	3,245,147,458	25,107,701,586	56,998,741,039	31,891,039,453	

(2) 재무제표 개요

보은군의 2025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2,258,208,233,456원으로 전년도 자산규모 대비 4,286,406,928원(0.2%)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23,038,196,889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1,259,470원(4.7%)이 증가함.

총수익은 526,570,820,404원으로 전년대비 25,107,701,586원(5.0%)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525,398,324,138원으로 전년대비 56,998,741,039원(12.2%) 증가하였음.

2025년 순자산은 3,245,147,458원(0.1%)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운영차액은 전년도 대비 31,891,039,453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3) 재무제표 핵심지표 연도별 추세

총 7개의 재무제표 핵심지표에 대하여 2021년부터 5년간 연도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주민 수는 1,349명 감소하였고, 공무원 수는 42명 증가하였음.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474천원 증가하였고, 주민1인당 정부지원수익은 1,365천원, 공무원1인당 인건비는 11,714천원, 주민1인당 도비지원금은 480천원, 주민1인당 사회보장민간지원금은 1,746천원,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은 1,935천원, 주민1인당 사회기반시설은 3,290천원 증가하였고, 주민1인당 총부채액은 239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무제표 핵심지표 연도별 추세

(단위 : 천원)

핵심지표	산 출 서 식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1년 대비 2025년 증감액
		총 액	산출액	총 액	산출액	총 액	산출액	총 액	산출액	총 액	산출액	
주 민 수			31,878		31,455		31,010		30,527		30,529	-1,349
공무원수			652		669		669		676		694	42
① 주민 1인당 자체 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 ÷ 주민 수	43,651,464	1,369	45,348,552	1,442	55,045,425	1,775	60,988,445	1,998	56,253,221	1,843	474
② 주민 1인당 정부지원수익	정부지원수익(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주민 수	341,838,084	10,723	416,441,674	13,239	351,323,493	11,329	354,846,658	11,624	369,022,238	12,088	1,365
③ 공무원 1인당 인건비	인건비(일반회계 급여, 복리후생비,퇴직급여) ÷ 공무원 수	49,804,111	76,387	52,484,611	78,452	55,529,695	83,004	58,398,105	86,388	61,142,074	88,101	11,714
④ 주민 1인당 도비 지원금	(시도비보조금+시군조정 교부금) ÷ 주민 수	64,324,577	2,018	73,605,523	2,340	75,993,014	2,451	68,692,896	2,250	76,261,674	2,498	480
⑤ 주민 1인당 사회보장 민간 지원금	민간보조금 ÷ 주민 수	138,684,011	4,350	149,305,145	4,747	170,373,211	5,494	154,345,206	5,056	186,116,295	6,096	1,746
⑤ 주민 1인당 총부채액	총부채액 ÷ 주민 수	31,684,209	994	29,361,434	933	25,943,578	837	21,996,937	721	23,038,197	755	-239
⑥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 ÷ 주민 수	324,315,678	10,174	338,837,428	10,772	354,011,948	11,416	359,284,519	11,769	369,673,434	12,109	1,935
⑦ 주민 1인당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 주민 수	1,474,337,626	46,249	1,510,103,284	48,008	1,500,641,036	48,392	1,498,131,368	49,076	1,512,375,908	49,539	3,290

5. 성과보고서

보은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보은군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4개, 8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24	84	168	25	112	31	81.5
본 청	기획감사실	1	2	6	1	2	3	50.0
	경제정책실	1	8	12	2	4	6	50.0
	미래전략과	1	3	5	0	3	2	60.0
	재난안전과	1	4	5	0	5	0	100.0
	스마트농업과	1	1	9	1	8	0	100.0
	복지정책과	1	5	9	0	7	2	77.8
	주민행복과	1	7	11	5	6	0	100.0
	문화관광과	1	3	7	2	5	0	100.0
	행정운영과	1	5	8	1	5	2	75.0
	재무과	1	3	7	0	7	0	100.0
	민원과	1	5	9	1	8	0	100.0
	환경위생과	1	6	10	2	3	5	50.0
	축산과	1	2	3	1	1	1	66.7
	산림녹지과	1	3	7	1	4	2	71.4
	건설과	1	5	10	0	10	0	100.0
	지역개발과	1	6	12	0	10	2	83.3
	스포츠산업과	1	2	5	2	1	2	60.0
직속 기관	보건행정과	1	3	3	0	3	0	100.0
	건강증진과	1	4	6	3	3	0	100.0
	농촌지원과	1	1	3	1	2	0	100.0
	기술보급과	1	1	3	0	2	1	66.7
사업 소	상하수도사업소	1	3	10	2	7	1	90.0
	속리산휴양사업소	1	1	5	0	3	2	60.0
의회	의회사무과	1	1	3	0	3	0	100.0

보은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24개부서 84개 정책사업목표 168개 성과지표 중 81.5%인 137개 사업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고 31개 사업이 미달성하였음.

실과소별로는 재난안전과 등 11부서에서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에서는 5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재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서의 목표치 설정이 적합한지, 보은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표 및 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충실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효과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또한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는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6,534,528,788	1,299,812,800	604,972,800	7,229,368,788
일 반 회 계		1,817,155,988	-		1,817,155,988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717,372,800	1,299,612,800	604,772,800	5,412,212,800
기금	자활기금		200,000	200,000	-

2025년 말 보은군이 보유한 채권액은 7,229,368,788원으로 일반회계 1,817,155,988원, 특별회계 5,412,212,800원이며,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145,000,000원,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금대여금 1,672,155,988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5,412,212,800원이 있음.

(2) 채 무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5,372,749,000	-	-	5,372,749,000
일 반 회 계		5,372,749,000	-	-	5,372,749,000

2025년 말 현재 보은군 채무는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차입금 5,372,749,000원이 있고, 채무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보은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3)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667,229,961,013	71,584,625,623	24,641,026,085	1,714,173,560,551
행 정 재 산	1,493,930,973,700	44,051,151,953	23,812,929,030	1,514,169,196,623
일 반 재 산	48,101,105,123	2,595,684,300	828,097,055	49,868,692,368
건설중인재산	125,197,882,190	24,937,789,370	0	150,135,671,560

2025년 말 현재 보은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토지 41,465,584㎡ 245,011,504,878원, 건물 376,919㎡ 276,011,503,841원, 기타 166,853건 1,193,150,551,832원 등 총 1,714,173,560,551원 상당이며, 전년도 1,667,229,961,013원보다 46,943,599,538원이 증가하였음.

(4) 물 품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 량	862	15	6	871
금 액	10,389,474,000	146,822,000	47,445,000	10,488,851,000

2024년 말 현재 정수물품 현황은 총 862개 10,389,474,000원이며, 신규 취득 등으로 15개(146,822,000원)가 증가하고 매각·양여 등으로 6개(47,445,000원)가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871개 10,488,851,000원임.

주요 증가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에 따른 차량운반구 구입, 냉난방기 및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확인됨.

7. 금고 결산

(1) 2025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 : 원)

구 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잔 액 (금고보관액) (㉠-㉡)	비 고
합 계	722,788,304,410	582,431,011,360	140,357,293,050	
일반 회계	667,697,208,200	542,833,413,080	124,863,795,120	
기타 특별회계	55,091,096,210	39,597,598,280	15,493,497,930	
상수도사업	7,735,981,680	5,053,829,650	2,682,152,030	
하수도사업	25,903,978,690	19,529,876,820	6,374,101,870	
수질개선	7,582,254,570	7,253,098,470	329,156,100	
행복주택	1,972,262,800	1,319,653,130	652,609,670	
공공실버주택	623,513,550	439,030,630	184,482,92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7,041,078,040	3,903,687,480	3,137,390,560	
농공단지조성관리	621,130,550	98,811,000	522,319,5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7,504,390	77,300,000	204,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191,054,900	713,135,930	1,477,918,970	
의료급여기금	563,691,430	537,699,650	25,991,780	
주차장	778,645,610	671,475,520	107,170,090	

(2) 금고결산 개요

2025회계연도 군 금고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액, 지출액, 잔액(금고 보관액) 등 수입과 지출이 관련 증빙서류 계수와 일치하였음.

Ⅳ.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지난연도 수입 징수관리 미흡

□ 현 황

○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입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계		1,992,633,850	198,611,820	1,789,479,160	90
기획감사실	지난연도 수입	9,989,260		9,989,260	100
경제정책실	지난연도 수입	371,734,940	484,940	371,250,000	99
미래전략과	지난연도 수입	6,833,020	10,320	6,822,700	99
재난안전과	지난연도 수입	2,540,200		2,540,200	100
스마트농업과	지난연도 수입	83,595,200	3,000,000	80,595,200	96
복지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7,516,370	2,435,000	5,081,370	67
주민행복과	지난연도 수입	91,510	36,200	56,310	62
문화관광과	지난연도 수입	47,700		47,700	100
행정운영과	지난연도 수입	11,920	740	11,180	93
재무과	지난연도 수입	73,034,420		73,034,420	100
민원과	지난연도 수입	1,123,205,810	185,704,100	932,886,160	83
환경위생과	지난연도 수입	84,921,320	1,046,460	83,874,860	98
산림녹지과	지난연도 수입	49,592,750	3,642,150	45,950,600	92
건설과	지난연도 수입	67,778,920	2,251,910	65,598,690	96
상하수도사업소	지난연도 수입	15,775,140		15,775,140	100
속리산휴양사업소	지난연도 수입	95,965,370		95,965,370	100

□ 문 제 점

-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의 발생 시 적정하게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결정된 수입금은 지체없이 수납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세입결산내역 상 지난연도 수입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의 90%가 미수납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징수결정 이후 수납 및 체납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독촉, 압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이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향후 세입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세입과목 분류 기준 준수 미흡

□ 현 황

○ 세입과목 분류 오류내역

(단위 : 원)

부서	세입목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 고
스마트농업과	공유재산임대료	56,000,000	1,950,000	1,950,000	
	그외수입		105,538,200	105,538,200	

□ 문 제 점

- 세입의 부과과정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56,562,540원을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음.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세입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정확한 세입과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는 세입과목 분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정한 회계처리에 해당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과목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결산 및 세입처리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과목으로 계상하도록 업무처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3.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관리 미흡

□ 현 황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원)

부서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미수납액	비 고
계	96,245,110	59,123,740	298,510	37,419,880	
경제정책실	52,473,110	35,326,200	298,510	17,445,420	
문화관광과	3,622,170	40,230		3,581,940	
축 산 과	26,326,690	13,125,380		13,201,310	
산림녹지과	4,200,480	3,945,400		255,080	
건 설 과	9,622,660	6,686,530		2,936,130	

□ 문 제 점

- 공유재산임대료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0%에 육박하여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수입을 저해하고, 장기체납 누적으로 징수가능성 감소 등 공유재산관리의 공정성 및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 발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공유재산(행정재산) 임대료는 정해진 기한 내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발생 시 독촉 및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개 선 및 권고사항

- 임대료 체납발생시 독촉 및 계약해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징수대책 수립과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4. 세입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부적정

□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초과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입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계		12,376,678,840	12,411,085,640	-34,406,800	
스마트농업과	시도비보조금 등	11,436,662,000	11,458,582,000	-21,920,000	
복지정책과	기타과태료	9,520,000	10,500,000	-980,000	
민원과	과 징 금	2,500,000	2,600,000	-100,000	
환경위생과	기타과태료	18,976,000	23,521,400	-4,545,400	
축산과	기타과태료	1,120,000	1,360,000	-240,000	
스포츠산업과	기타사용료	342,669,840	343,831,240	-1,161,400	
속리산휴양사업소	시도비보조금 등	565,231,000	570,691,000	-5,460,000	

□ 문 제 점

- 일부 세입항목에 대하여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됨.
- 세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선행한 후 수납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을 초과한 것은 징수결정의 누락 또는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세입처리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발생 시 징수결정을 선행한 후 수납처리를 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 수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징수결정 누락분을 보완하고 과오납 또는 이중수납 여부를 확인 및 정리하는 등 세입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순세계잉여금 산정 및 세입 관리 철저

□ 현 황

○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 및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4년도 순세계 잉여금(a)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 및 수납			차액 (c=b-a)	사 유	관 련 부 서
		2025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계	32,489,388,300	32,354,993,070	33,057,081,900	33,057,081,900	567,693,600		
일반회계	28,010,867,380	27,330,867,000	27,330,867,380	27,330,867,380	-680,000,000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정산(특별회계 반환)	기획감사실
특별회계	4,478,520,920	5,024,126,070	5,726,214,520	5,726,214,520	1,247,693,600		
상수도 특별회계	1,022,104,190	1,022,104,000	703,541,000	703,541,000	-318,563,190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	1,845,891,490	1,845,891,000	1,845,891,000	1,845,891,000	-490		상수도 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86,240,490	6,000,000	424,204,070	424,204,070	337,963,580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산정 오류	환경 위생과
행복주택 특별회계	946,258,290	946,258,000	946,258,290	946,258,290	-		지역 개발과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83,399,070	83,399,070	84,341,610	84,341,610	942,540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산정 오류	지역 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121,610,000				121,610,000	2024년도 이월액 과다 산정으로 감액	경제정 책실
농공단지조성 관리특별회계	1,064,240				-1,064,240	세입누락으로 2026년도 예산에 반영	경제 정책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9,850				-109,850	이월사업으로 편성	경제 정책실
주민소득 지원및생활 안정자금특 별회계	563,474,120	1,115,474,000	1,698,830,650	1,698,830,650	1,135,356,530	과년도 사업비 잔액 등 포함	스마트 농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441,280				-28,441,280	세입누락으로 2026년도 예산에 반영	복지 정책과
주차장 특별회계	23,147,900	5,000,000	23,147,900	23,147,900	-		민원과

□ 문제점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 결산에서 남은 금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결산이 확정된 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202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2025년도 예산 반영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많은 부분에서 전년도에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징수결정액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산정 오류, 세입과목 오류, 세입 누락 등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산출과, 익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6. 세입세출외현금 산정 및 세입 관리 철저

□ 현 황

○ 2025년도 세입세출외현금과 잔액증명서 현황

(단위 : 원)

구 분	세입세출외 현금(a)				잔액증명 (b)	차 액 (c=b-a)	사 유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계			
계	128,168,090	347,708,486	5,661,168	481,537,744	462,092,205	-19,445,539	
본 청	128,168,090	318,265,428	4,996,660	451,430,178	367,182,038	-84,248,140	잔액 증명서 누락
보건소		12,659,360	6,780	12,666,140	12,666,140	-	
농업기술 센터		171	15	186	43,395,287	43,395,101	타 계좌 잔액 포함
상하수도 사업소		4,961,032		4,961,032	4,964,022	2,990	이자 수입
속리산휴 양사업소		5,753,495	525,940	6,279,435	8,992,775	2,713,340	보관금 누락
보은읍		7,170		7,170	7,170	-	
속리산면		19,920		19,920	18,001,990	17,982,070	타계좌 잔액 포함
장안면		1,258,780	330	1,259,110	1,259,110	-	
마로면			116,980	116,980	547,540	430,560	이중 부과 등
탄부면		1,715,580	890	1,716,470	1,716,470	-	
삼승면			160	160	160	-	
수한면		10,000		10,000	10,000	-	
회남면		1,529,190		1,529,190	1,529,190	-	
회인면				-	90	90	이자 수입
내북면				-	-	-	
산외면		1,528,360	13,413	1,541,773	1,820,223	278,450	미반환 금
의 회 사무과				-	-	-	

□ 문제점

-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 예산에서 확정된 세입금·세출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서 관할 관청에서 보관한 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환하는 현금으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분류됨
-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규정에 따라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과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이 8개 관서에서 불일치하였음.
- 불일치 사유로는 세입세출외현금 외의 타 계좌가 포함한 잔액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와, 누락, 이중부과 등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의 현금이 금고와 불일치 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일치 하도록 조치하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7.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 현 황

○ 명시이월사업 중 1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목	명시이월액 (a)	지출액 (b)	사고이월액 (c)	불용액 (d=a-b-c)	사 유
11건		9,746,681,030	2,421,836,860	2,376,792,300	4,948,051,870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사업	시 설 비	3,845,000,000	1,303,537,880	2,376,792,300	164,669,820	집행잔액
웰컴보은 프로젝트 운영	시 설 비	151,860,700	1,930,000		149,930,700	사업변경
고령자복지주택	시 설 비	,963,925,500	1,824,900		1,962,100,600	사업포기
고령자복지주택	감 리 비	700,000,000			700,000,000	사업포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자산및물 품취득비	230,000,000	91,866,460		138,133,540	집행잔액
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00,000			350,00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대안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 설 비	868,024,560	678,864,020		189,160,540	집행잔액
구터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	시 설 비	468,057,000	324,123,600		143,933,400	집행잔액
보은중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369,813,270			369,813,270	대행사업자 사업추진 지연
보은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시 설 비	700,000,000	19,690,000		680,310,000	사업추진 지연

□ 문제점

-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기간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및 시행방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또한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세부 사업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감액 편성할 수 있고,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면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상기 11건의 사업은 명시이월 확정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예산을 불용 처리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편성하고,
-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월금액 확정시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월된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명시이월과 세출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8. 징수결정 관련 부서 일원화

□ 현 황

○ 징수결정 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상이한 사업 현황

(단위 : 원)

징수결의 부서	예산편성부서	목	징수결정액	예산액	수납액	비 고
기획 감사실	-	특 별 교부세	805,000,000		805,000,000	
-	미래전략과	특 별 교부세		300,000,000		
-	건설과	특 별 교부세		105,000,000		
-	-	특 별 교부세		350,000,000		2026년 사업편성
-	-	특 별 교부세		50,000,000		2026년 사업편성
기획 감사실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4,082,479,000		4,082,479,000	
-	미래전략과 등 5개과			4,082,479,000		
재무과	-	부동산 교부세	4,082,479,000		4,082,479,000	
-	기획감사실	부동산 교부세	12,385,143,000	18,314,000,000	12,385,143,000	
산림 녹지과	-	특 별 교부세	140,000,000		140,000,000	
-	산림녹지과	도 비		140,000,000		
스포츠 산업과	-	특 별 교부세	900,000,000		900,000,000	
-	-	특 별 교부세		900,000,000		2026년 사업편성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5건의 특별교부세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징수결의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음.
- 또한 일부 예산은 연도 말에 교부됨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부적합한 사례가 나타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 세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징수결정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가 일치하도록 하고
- 연도 말에 교부되는 예산은 간주처리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징수결정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를 일원화하여 예산의 징수 및 편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9. 이월 사업비 발생 최소화

□ 현 황

○ 이월액 현황

(단위:원, %)

구분	이월액				전년대비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2023	127,114,365,330	50,682,226,150	7,913,823,230	18,507,489,550	102	
2024	144,639,648,010	72,144,758,660	17,581,033,850	18,094,121,930	113	
2025	170,122,444,260	49,477,442,270	20,232,309,340	21,239,459,320	117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 예산의 이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다 쓰지 못한 세출 예산을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수 있음
- 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로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부족, 집행계획의 비현실성, 사업추진 일정 미흡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월 사업비 증가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체계적인 예산관리 및 사업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편성 단계부터 집행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이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 2025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편성

□ 현 황

○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액 (가)	전년도 이월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징수결정액 (라)
34개 부서 (본청 및 사업소 23개, 읍면11개) 148건	0	0	0	16,451,775,900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14,887,678,190	4,615,550		1,560,706,610	

※ 실과 및 읍면 내역서 붙임

□ 문 제 점

-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을 보면 34개부서(본청 및 사업소, 읍면) 148건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으로 결산하고 있으며 이중 예산 편성없이 16,451,775,900원이 징수 결정 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수입이 결산시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사전 반영하여 예산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사업내역(징수결정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계	148	-	16,451,775,900	14,887,678,190	4,615,550	1,560,706,610
기획감사실	4	-	4,912,560,480	4,902,571,220	-	9,989,260
경제정책실	4	-	87,564,690	69,462,980	-	18,101,710
미래전략과	5	-	64,777,550	64,777,550	-	-
재난안전과	2	-	10,276,540	7,736,340	-	2,540,200
스미트농업과	9	-	776,596,350	696,001,150	-	80,595,200
복지정책과	8	-	730,084,120	725,215,140	-	4,868,980
주민행복과	6	-	550,619,530	549,895,090	-	724,440
문화관광과	4	-	51,798,160	48,679,090	-	3,119,070
행정운영과	6	-	38,920,030	38,919,750	-	280
재무과	6	-	5,850,135,290	5,849,668,620	-	466,670
민원과	3	-	1,238,518,870	301,017,160	4,615,550	932,886,160
환경위생과	6	-	134,073,140	50,204,550	-	83,868,590
축산과	5	-	65,329,670	52,368,360	-	12,961,310
산림녹지과	10	-	281,054,990	231,062,950	-	49,992,040
건설과	10	-	172,599,560	97,887,310	-	74,712,250
지역개발과	8	-	478,946,830	304,217,180	-	174,729,650
스포츠산업과	2	-	113,635,540	113,636,340	-	-800
의회사무과	1	-	1,063,070	1,046,270	-	16,800
보건행정과	4	-	56,320,570	56,320,500	-	70
건강증진과	3	-	19,537,590	19,537,590	-	-
농촌지원과	3	-	20,492,210	20,492,210	-	-
상하수도사업소	4	-	31,782,940	15,047,800	-	16,735,140
속리산휴양사업소	2	-	185,127,960	88,215,870	-	96,912,090
보은읍	4	-	427,411,750	429,886,750	-	-2,475,000
속리산면	3	-	27,435,100	27,435,100	-	-
장안면	2	-	13,147,850	13,147,850	-	-
마로면	2	-	26,555,300	26,454,200	-	101,100
탄부면	3	-	7,799,850	7,795,650	-	4,200
삼승면	2	-	18,096,900	18,096,900	-	-
수환면	3	-	6,653,830	6,653,830	-	-
회남면	2	-	6,058,680	7,307,130	-	-24,000
회인면	3	-	15,003,000	15,003,000	-	-
내북면	3	-	16,664,540	16,783,340	-	-118,800
산외면	3	-	7,566,710	7,566,710	-	-

V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관리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세밀한 소요 사업비의 산출이 요구되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 또한 사업 진행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출에 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함.

□ 조치내용

부서명	조치내용
경제정책실	□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건에 대하여 ○ 예산편성의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기금 운용잔액과 사업비를 점검하여 특별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2. 세외수입 세입금 관리 개선 수립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금 미수납액은 결국 세외수입 체납률 증가로 이어지며, 이중부과 등 착오 부과 자료의 미정리는 추후 납세자의 이중납부의 원인이 됨.
- 과목별 미수납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부서별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수수료 수입에 대한 즉시 수납이 가능하도록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조치내용

부서명	조치내용
재무과	□ 세외수입 미수납액 - 증지수입 미수납액 525천원 - 폐기물처리수수료 미수납액 103천원 - 보건의료수수료 미수납액 55천원 건에 대하여 ○ 증지수입 미수납액 525,330원 - 수납 495,530원 - 이중부과에 따른 감액 29,800원(5건) ○ 폐기물처리수수료 미수납액 103,200원 - 수납 72,500원 - 이중부과에 따른 감액 30,700원(3건) ○ 보건의료수수료 미수납액 55,600원 - 수납 3,700원 - 이중부과에 따른 감액 51,900원(1건) 조치완료

3. 특별회계 세입관리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이 발생 시 세입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세입의 적시 자원 배분 및 세입관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의 관리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조치내용

부서명	조치내용
상하수도 사업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세입 착오 건에 대하여 ○ 과오납 반환 처리 완료하였음 (일반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4. 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노력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계획,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사고이월을 진행하고 세출예산 집행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치내용

부서명	조치내용
기획감사실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발생 현황 - 보은군 업무평가 4,000천원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7,500천원 건에 대하여, ○ 업무평가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초에 결정되며, 최종평가 완료 후 준공금을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 초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완료 후 준공금 집행이 가능
경제정책실	○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편성하겠음
미래전략과	○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각종 절차이행을 미리 준비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재난안전과	○ 사업추진 시 인허가 사전협의, 시설공사 공정관리,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이월 사업비는 연내 집행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스마트농업과	○ 기존의 방식대로 예산을 답습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밀검토 및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겠음
복지정책과	□ 보훈회관 건립사업 187,000천원 건에 대하여, ○ 설계용역비 149,000천원 집행 완료 ○ 잔액 38,000천원 하반기 집행 예정
주민행복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309,339천원 25.3.~7. 집행 완료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감리비): 13,153천원 25.5월 집행 완료 ->잔액580,967천원 25.7월중순 집행 예정
	○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천원 25.5월 집행 완료
	○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행사운영비): 192,000천원 25.1.~2. 집행 완료
문화관광과	○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및 검토 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행정운영과	○ 사업추진계획 및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및 편성하겠음 ○ 사업추진 시 철저한 준비로 당초계획한 사업일정 내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겠음
민원과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발생 건에 대하여 -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2025.4. 집행완료 -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2025.5. 집행완료
환경위생과	○ 예산편성의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이월사업을 줄이겠음

축산과	○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이월사업을 줄이겠음 ○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을 세워 각종평가 등 절차이행을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산림녹지과	○ 이월사업 건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사업 집행 및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음
건설과	○ 관행적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사업 전 철저한 수요조사 및 집행가능 여부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으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지역개발과	○ 사업계획,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특별교부금 및 정부보조금 등 연말에 확보되는 사업예산 외에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스포츠 산업과	○ 공정지연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농업 기술센터	○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월된 사업은 연내집행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음
상하수도 사업소	○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정밀검토 및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겠음
속리산 휴양사업소	○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정밀검토 및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겠음

5. 통합재무제표 일반회계 오류 정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산, 부채, 순자산 항목별 분개 내역 등 재무제표 항목 간 불일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오류를 정정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복식부기 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등 재무제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내용

부서명	조치내용
재무과	○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 오류에 따라 차변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장되어 불일치가 발생함. 해당 내용을 지방재정시스템에 통보하여 보정하였으며, 2024년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합계가 일치함을 확인함

6.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오류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목표 달성현황 입력 시, 실적치가 누락되지 않게 하고 성과목표 단위를 기재하여 각 사업의 목표 달성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성인지결산 담당자 교육을 통해 성인지 결산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내용

부서명	조치내용
기획감사실	○ 누락된 실적치 및 성과목표단위 기재 ○ 2025성인지 결산 시 담당자 교육